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83
----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여성가족부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있어서 지역연대의 중심적 활동이 보호보다는 안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호를 안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 제명 변경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

→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

나. 본문에서 용어 변경

- “아동·여성 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1조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(안 제7조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(안 제8조제3항)
- “아동·여성 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(안 제8조제5항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9조제2호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9호제4호)

3. 개정근거

- 여성가족부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 명칭변경 사용안내

(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-1734,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-8694)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2. 8. 23. ~ 2012. 9. 12. (제출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(감사담당관-8230호)

가)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에서 아동·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세부사항이 미규정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권고

○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규정

1. 지역연대의 연간 운영 계획
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3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4. 아동·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·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) 제8조(지역연대 구성)에서 지역연대 위원의 구성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이 미반영되어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 신설

○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그 밖에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 검토 : 가정복지과-34860호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 : 원안동의(가정복지과-35157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아동·여성 안전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지역연대의 연간 운영 계획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3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아동·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·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아동·여성 안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6호 중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아동·여성 안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보호를”을 “안전을”로 한다.

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그 밖에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

제9조제2호 중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아동·여성 안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보호를”을 “안전을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<u>아동·여성보호에</u>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<u>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<u>아동·여성 안전에</u></p>
<신 설>	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<u>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지역연대의 연간 운영 계획</u> <u>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</u> <u>3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u> <u>4. 아동·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·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② <u>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역연대의 설치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,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아동·여성보호</u> 지역연대(이하 "지역연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제7조(지역연대의 설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아동·여성</u></p> <p><u>안전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8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아동·여성보호</u> 관련 기관 및 시설</p> <p>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⑤ 아동·여성 <u>보호</u>를 위하여 전문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아동·여성 안전</u>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</p> <p>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p> <p>3. 그 밖에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</p> <p>⑥ ----- <u>안전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제9조(지역연대의 기능) 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아동·여성보호</u>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	2. <u>아동·여성 안전</u>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지역 내 아동·여성 <u>보호</u> 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	4. ----- <u>안전을</u> -----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6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